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김현수 소유물건(2026타경30297)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미애
감정평가서 번호	m8-267012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명문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A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50 301호

T 062-401-1369 F 062-401-1361

m8-267012901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명문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인)
지사장 김황수

감 정 평 가 사 김 황 수 (인)
김황수

감정평가액	일억칠천구백만원정 (₩179,000,000.-)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미애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 출 처	광주지방법원 경매2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현수 (2026타경30297)	감정평가조건	-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 02. 06	2026. 01. 29 ~ 2026. 02. 06	2026. 02. 06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	179,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79,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문 창 환 (인)

m8-267012901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라인광장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12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및 용도지역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5 아파트 제101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03			1층	1,026.26			
				2층 ~ 11층 각	1,003.58			
				지하실	987.84			
1	상동	985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135.4			
1-(가)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1층 제1112호	59.83	59.83	179,000,000	비준가액
				1. 소유권 대지권	28.82 22,135.4x--- 22,135.4	28.82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07,400,000	
						건 물 :	71,600,000	
	합 계						₩179,000,000.-	
				이 하	여	백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봉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봉선동 985 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12호)으로서, 광주지방법원 경매2계(2026타경30297)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없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6년 1월 29일 ~ 2026년 2월 6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2월 6일임.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6. 감정평가 관계법령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의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실무기준」 610-3.1.3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①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400-4]를 따른다.

②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감정평가의 방법

(1)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2)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3)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4)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8.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9. 그 밖의 사항

(1) 본건의 위치 및 내부이용상황 등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현황 점유부분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I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건물 개요(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5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03				
명칭	라인광장아파트 101동				
건물의 개황	주용도	층수		주구조/지붕	사용승인일
		지하	지상		
	아파트	1	1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987.01.28

2. 감정평가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동/층/호	용도	건물면적(㎡)			소유권 대지권 (㎡)	비고
			전유	공용	합계		
1-(가)	101/11/1112	아파트	59.83	10.71	70.54	28.82	-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과정

1.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면적 (㎡)	거래금액(원) 전유단가(원/㎡)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1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3/ 11/11**	59.93	28.87	180,000,000 @3,003,504	2025.09.20 / 1987.01.28
#2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2/ 5/5**	59.83	28.82	153,000,000 @2,557,245	2025.06.09 / 1987.01.28
#3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8/ 2/2**	59.98	28.9	150,000,000 @2,500,833	2025.02.04 / 1988.04.12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 비교사례 선정 및 선정사유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비교사례 선정
1-(가)	거래사례 #1

■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면적 (㎡)	거래금액(원) 전유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3/ 11/11**	59.93	28.87	180,000,000 @3,003,504	2025.09.20
							1987.01.28

3. 사정보정

의 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1.000

4. 시점수정

■ 비교 거래사례 #1

대상물건은 아파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광주 남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구분	대상 기준시점 / 사례 거래시점	적용 월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대상	2026.02.06	2025.12	98.1	0.99797
거래사례	2025.09.20	2025.08	98.3	

※ 미발표된 월의 매매가격지수는 발표된 매매가격지수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연장사정함.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 [본건 일련번호 1-(가) / 비교사례 #1]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항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계		1.000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일련 번호	전유 면적(㎡)	비교사례 거래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1-(가)	59.83	3,003,504	1.000	0.99797	1.000	2,997,406	179,334,800	179,000,000

※ 산정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 시산가액은 백만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IV.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 면적 (㎡)	평가 목적	평가금액(원) 전유단가(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8/ 5/5**	59.9	법원경매	172,000,000 @2,871,452	2025.12.02 1988.04.12
ⓑ	봉선동 985	라인광장 아파트	102/ 7/7**	59.83	법원경매	187,000,000 @3,125,522	2025.05.30 1987.01.28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2.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유형	가격수준 (원/전유면적㎡)	비고
인근 유사 아파트	2,500,000 ~ 3,200,000	층별, 위치별 등에 따라 가격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출처 : 인근 부동산)

3. 경매 동향

용도별	광주 남구 2025년 02월 ~ 2026년 01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아파트	16,029,600,000	12,848,814,744	80.2	161	62	38.5

(출처 : 인포케어)

Ⅴ.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

평가 대상		전유면적(㎡)	대지권(㎡)	감정평가액(원)
1-(가)	제101동 제11층 제1112호	59.83	28.82	179,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인근 거래사례, 평가사례, 부동산 탐문조사 등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 참고가격 자료에 의해 적절히 지지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봉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시장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11층 111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7.01.28, 복도식)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정방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동측으로 왕복 2차선,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북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봉선동 985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6-12-01),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12m)(1986-06-04)(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09-09-2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m8-267012901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5 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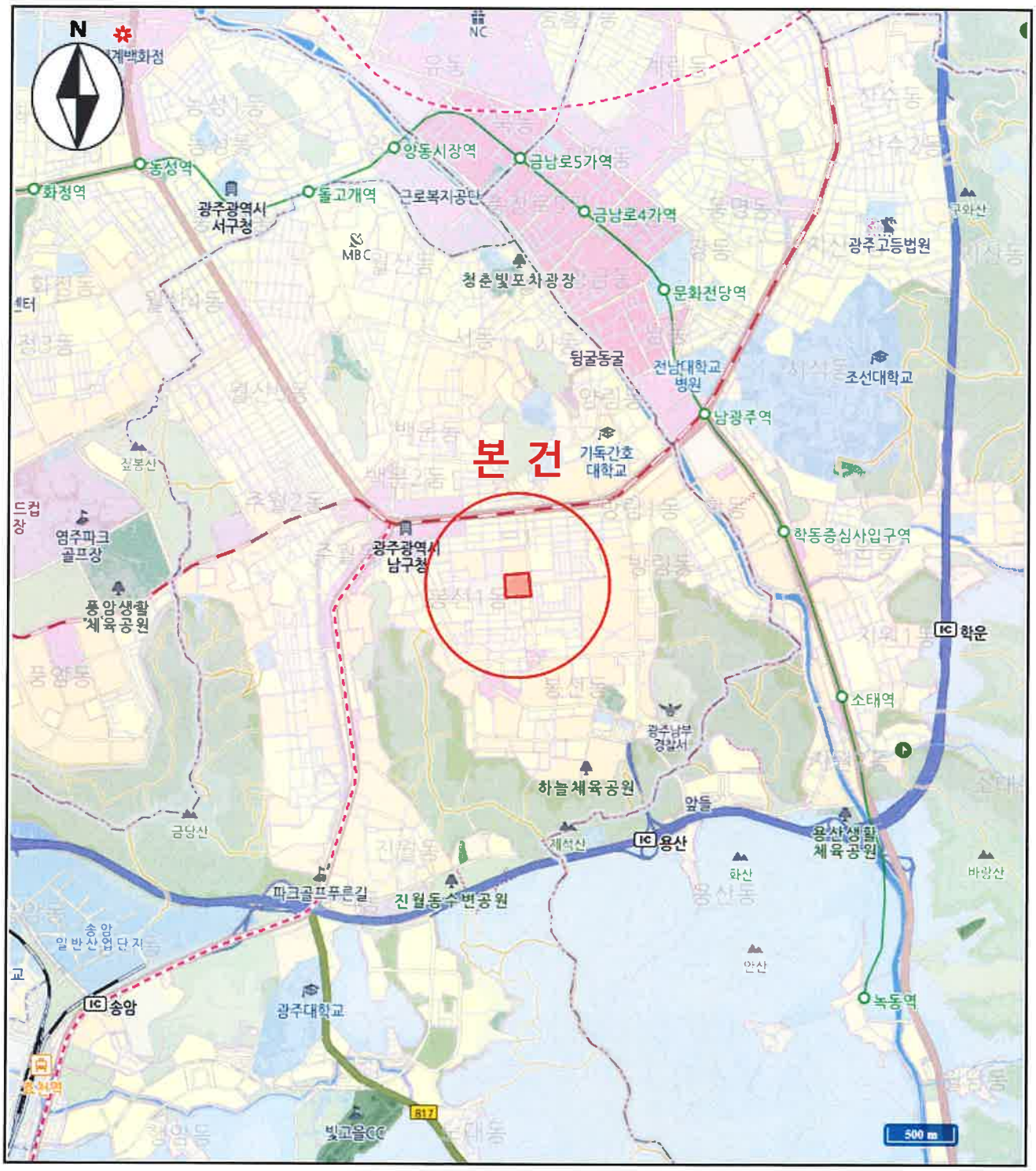

주|명문감정평가법인

호 별 배 치 도

N

S

S=1/no scale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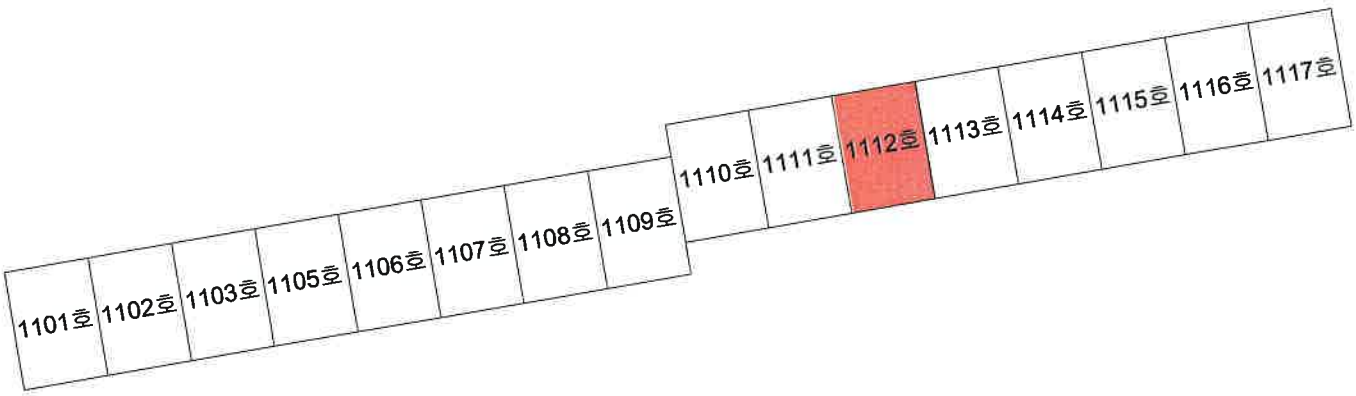

본건 : 라인광장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12호

사 진 용 지



1. 101동 전경



2. 공동 출입구

사 진 용 지



3. 본건 현관문



4. 내부 복도



5. 주위환경(단지 동측)



6. 주위환경(단지 서측)